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9
----------	-----

제출년월일 : 2013. 07.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증명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시민의 무인민원 발급 이용률을 높이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정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신설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400원/ 필지당 (일반 발급 필지당 800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400원/ 1건 (일반 발급 필지당 800원)
- ※ 일반발급 대비 수수료 인하

나. 상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수수료 신설

- 내수면어업신고신청 : 1,000원/ 1건
-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1,000원/ 1건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 10,000원/ 1건
-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 3,000원/ 1건
-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 10,000원/ 1건

- 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반영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수수료
1건 (20,000원 ⇒ 10,000원)
 - 내수면어업면허신청
10,000원⇒ 양식어업·정치망어업(9,000원), 공동어업(7,500원)
 - 내수면어업면허가신청 : 1건당(10,000원 ⇒ 5,000원)
 -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 신청 :
1건당(10,000원 ⇒ 5,000원)
 -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 1건당(3,000원 ⇒ 1,500원)
 -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1건당(3,000원 ⇒ 1,500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2013. 6. 7 ~ 6. 27)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완료
 -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 증명 칸에 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칸 라, 농수산관계 항목의 5)부터 9)까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16)부터 2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칸 바. 건설운수관계의 16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수수료 “20,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1. 증명			
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신설 (추가 1장 100원)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필지	400원	
2)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400원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라. 농수산관계			
5) 내수면어업면허신청			개정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1건	9,000원	
- 공동어업	1건	7,500원	
6) 내수면어업허가신청	1건	5,000원	"
7)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
8)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
9)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
16) 내수면어업신고신청	1건	1,000원	신설
17)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
18)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1건	10,000원	"
19)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1건	3,000원	"
20)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10,000원	"
바. 건설운수관계			
16)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1건	10,000원	개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사항을 포함한다)을 처리한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되며,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0.22]

□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 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 · 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2011.3.9>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제11조(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산업법

제48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

②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 증명서와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①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낚시터업의 승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낚시터업의 승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16 생략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28 생략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85 생략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182 생략	